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교육감의 책무(안 제2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3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습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청 소속으로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소속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총경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해 관련 전문지식이 상당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7.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8.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과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2.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위원회 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재상정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의무)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을 그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감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 실제 조사,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3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과 연계된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한다.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3. 기관 간 정보 공유
4.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세부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장은 학교 단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유관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
인·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제15조(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
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의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II.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8조	지정취소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8조	시정 명령		지정 취소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8조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지정 취소

관 계 법 령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2. 교육감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3.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4.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5. 제2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장 소관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센터 및 조직 등의 총괄·관리 및 센터 간의 연계
 2.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수행
 3. 학교가 제11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 ③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의 예방·방지와 아동에 대한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위한 지원과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신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윤지성